

[첨부1] 채용 결격 사유

다음 각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, 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채용을 취소한다.

- 1)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4)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)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)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7)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8)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9)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10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
- 11)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
- 12)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- 13) 색각 이상자 [통신분야에 한함]
- 14)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- 15) 입사 전·후 위계(偽計) 또는 위·변조 증빙 사실이 발견된 자
- 16)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
- 17)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